

특 · 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황 준 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1. 서 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서 관할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1988년 지방자치법(법률 제4004호)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는 대도시 행정의 재정운영에 관한 특례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가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정수준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Civil Minimum) 제공이 가능토록 자치구의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로써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보통교부세 제도와 유사하다.

이러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7조에는 재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치구에 지원하는 규모나 운영방식은 특별 · 광역시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특별 · 광역시의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운영 실태를 보면 산정방식 일부를 개정하거나 재원규모를 결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율을 약간 변동하는 등 큰 변화 없이 운영해 왔다.

최근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이양¹⁾,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확대 기조 등 행정여건 및 환경이 변화되고 자치구의 재원소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어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의 확충과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점차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재원조정교부금제도 운영현황

1. 재원조정교부금의 기능

특별·광역시와 관할내 자치구의 경우 개발정도, 인구수 등의 격차로 인하여 재정규모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이러한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기능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간 재원을 조정해주는 수직적 재원조정기능, 광역자치단체내 자치구간 재정형평화 기능인 수평적 재원조정기능과 자치구의 자율성 제고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1) 수직적 재원조정기능

특별·광역시와 관할 자치구간 수직적 재원조정 기능으로서 대도시 자치구의 시·구간 사무 및 기능 분담에 상응한 재원 조정을 통하여 각 단체별 원활한 역할 수행을 도모하는 재원조정 기능이다.

2) 수평적 재원조정기능

특별·광역시 관할내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 형평화를 도모하는 기능으로서 자치구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여 관할 시내의 주민들에게 균형 있고 차별 없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기능이다.

1)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및 분권교부사업 신설

3) 자치구의 자율성 제고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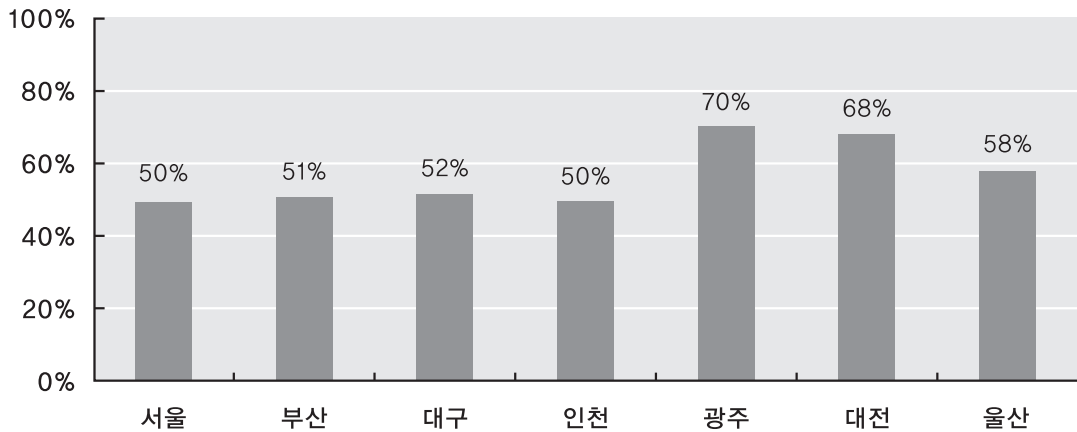
재원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부받는 의존수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금 성격으로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과 같이 비도가 정해지지 않는 재원으로 자치구의 일반재원 기능을 수행하여 자치구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특별시·광역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정율로 구성되고 있으며, 재원율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기능 및 사무 배분을 고려하고 재정여건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며 현행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율은 최저 50%, 최고 70%로 운영되고 있다(〈표1〉 참조).

〈표1〉 자치단체별 취·등록세중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율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등록세의 2007년도 재원규모는 6조 2,417억원 규모이다.

〈표2〉 '07년도 취·등록세 세입예산 현황

(단위:억원)

구분	계	취득세	등록세
계	62,417	30,148	32,269
서울	32,551	15,371	17,180
부산	7,268	3,744	3,524
대구	5,813	2,901	2,912
인천	7,847	3,820	4,027
광주	2,503	1,223	1,280
대전	3,824	1,837	1,987
울산	2,611	1,252	1,359

* 출처 :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3. 재원조정교부금의 종류

재원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고 있으며 종류별 재원비율은 조례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 보통교부금의 경우 재원의 90%, 특별교부금은 10% 수준으로 운영하나 부산광역시의 경우 보통 95%, 특별5%로 운영하고 있다(〈표3〉참조).

〈표3〉 자치단체별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보통	90%	95%	90%	90%	90%	90%	90%
특별	10%	5%	10%	10%	10%	10%	10%

2007년도 재원조정교부금 규모는 3조 5,374억원 규모로서 이중 특별교부금이 3,308억원이고 보통교부금은 3조 2,066억원이다(〈표4〉참조).

〈표4〉 '07년도 자치구 자원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억원)

광역 단체	합계	특 별 교부금	보 통 교부금 (A)	보통교부금 산정내역				
				기준재정 수 요 액 (B)	기준재정 수 입 액 (C)	재 정 부족액 (D=B-C)	조정률 (A/D)	재정력 지 수 (C/B)
합계	35,374	3,308	32,066	59,792 (63,750)	21,518 (27,484)	38,274 (36,266)	83.8% (88.4%)	0.360 (0.431)
서울	17,895	1,790	16,105	27,703 (31,661)	12,441 (18,407)	15,262 (13,254)	105.5% (121.5%)	0.449 (0.581)
부산	4,094	179	3,915	8,771	2,893	5,788	67.6%	0.340
대구	3,413	341	3,072	5,937	1,154	4,783	64.2%	0.194
인천	3,975	398	3,577	6,691	2,149	4,542	78.8%	0.321
광주	2,079	208	1,871	3,697	862	2,835	66.0%	0.233
대전	2,688	269	2,419	4,761	1,166	3,595	67.3%	0.245
울산	1,230	123	1,107	2,232	763	1,469	75.4%	0.342

※ ()는 불교부단체 포함

1) 보통교부금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며 보통교부금 총액이 자치구의 자원부족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율로서 조정교부하고 있다.

또한, 미달액을 보전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평균 기준 재정수요 충족비율에 못 미치는 자치구에 가산교부²⁾하고 있으며 매년 자치구의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익년도 보통교부금 계상액을 통보하고 있다.

2) 특별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재해 등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의 경우임

4. 보통교부금의 산정방법

보통교부금은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미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미달액이 보통교부금 총액보다 많을 경우 조정율을 적용하며 산정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oxed{\begin{array}{c} \Sigma \text{ 기준재정} \\ \text{수요액} \end{array}} - \boxed{\begin{array}{c} \Sigma \text{ 기준재정} \\ \text{수입액} \end{array}} = \boxed{\begin{array}{c} \text{재 정} \\ \text{부족액} \end{array}} \cong \boxed{\begin{array}{c} \text{보 통} \\ \text{교부금} \end{array}}$$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재정수요액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과 유사하며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³⁾으로 하고 있다.

측정항목이라 함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정항목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경비의 종류를 지칭한다.

또한, 측정단위는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측정항목별 수요를 대표할 수 있도록 측정항목과 상관도가 높은 변수(통계자료)를 측정단위로 활용하고 있다.

단위비용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비용을 의미하며 각 자치구별 전년도 예산액을 단위항목 수로 나눈 값이나 보통교부세의 단위비용, 회귀분석을 통한 산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산출하고 있다.

3)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어 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표8>참조.

〈표5〉 경비종류별 측정단위표 예시(대구광역시)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표

측 정 항 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1. 입법 및 선거관리비	의회운영비	기초의회 의원수	인
	선거관리비		
2. 일반행정비	인건비	지방공무원 정원	인
	일반관리비	지방공무원 정원	인
	행정정보화비	가구수	가구
	동행정비	통수	개
3. 교육 및 문화비	교육 및 문화비	인구수	인
4.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	보건 및 환경공해비	인구수	인
	청소비	가구수	가구
	공원녹지비	공원면적	천m ²
5.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비	인구수	인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인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인
6.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	행정구역면적	천m ²
7. 농임업비	개발비	임야면적	ha
	농임업비	경지면적	ha
8.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상공업 종사자수	인
9. 국토자원보전 개발비	도로개량비	미개량도로면적	천m ²
	도로유지비	도로면적	천m ²
	하천비	하천의 연장	m
10.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대
11. 민방위관리비		민방위대원수	인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기준재정수입액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액 등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본다⁴⁾.

아울러, 다양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모두 파악할 수 없고 자치구의 재원운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지방세 수입액 등의 20%를 제외하고 있으며 유보재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수입액의 95%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보고 있다.

4)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은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함으로 각 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표8〉참조.

III. 재원조정교부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운영상 문제점 중 여기서는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율이 자치단체별로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 재정부족액 보전율이 낮고 자치구별 실제수요와 기준재정 수요의 큰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문제 등 재원율과 산정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치단체별 재원비율의 상이

재원조정교부금의 모재원이 되는 취·등록세의 재원율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원율이 최고 20%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재원율이 낮은 시의 자치구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규모의 재원율로 인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자치구별 평균교부금이 261억원으로 광역시 평균교부금인 363억원에 102억원 가량 부족한 실정이다.

〈표6〉 자치구별 평균 재원조정교부금 현황

(단위: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비고
재원율	50%	51%	52%	50%	70%	68%	58%	
현행 자치구 평균 조정교부금 (C)	644	261	439	447	374	484	277	
전 자치구 평균 조정 교부금과 차이 (C-A)	179	-204	-26	-18	-91	19	-188	전 자치구 평균(A) 465
광역시 평균 조정 교부금과 차이 (C-B)	-	-102	76	84	11	121	-86	광역시 자치구 평균(B)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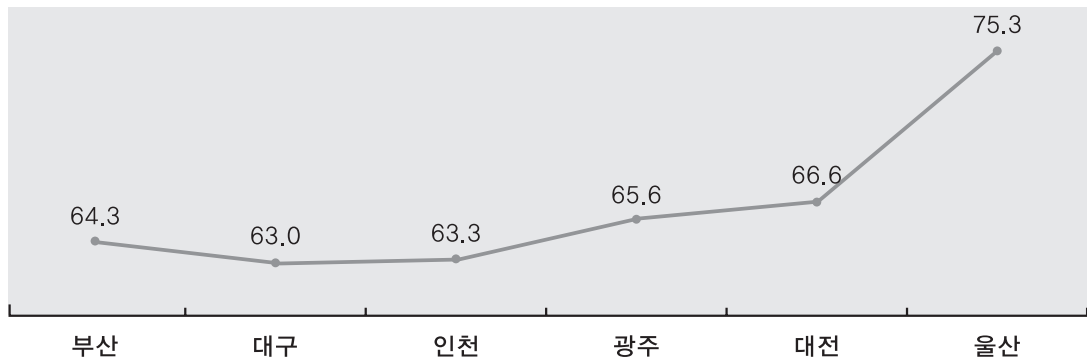
주 : '07 당초예산기준(보통)

2. 광역시의 낮은 재정보전율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재원을 보전하고 있으나 광역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재정부족액에 대한 조정율이 평균 66.3%에 불과하여 재원조정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유사제도인 보통교부세 3년 평균 조정률이 86.8%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광역시의 재정조정 기능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표7〉참조).

〈표7〉 '05 ~ '07년 광역시 평균조정률 현황(%)



※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103.3%(불교부제외)

3. 기준재정수요액과 실제 수요액간의 편차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인 기준재정 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과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이 각각 상이한 실정이다(〈표8〉참조).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수를 보면 광주·대전광역시가 가장 적은 11개이고, 부산광역시는 27개로 가장 많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9〉참조).

이는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토록 한 것이나 현격한 수요·수입 산정방식의 차이는 산정방식의 정확성에 대한 논의를 일으킬 수 있고 자치구의 실제 수요액(예산 편성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의 큰 차이 역시 정확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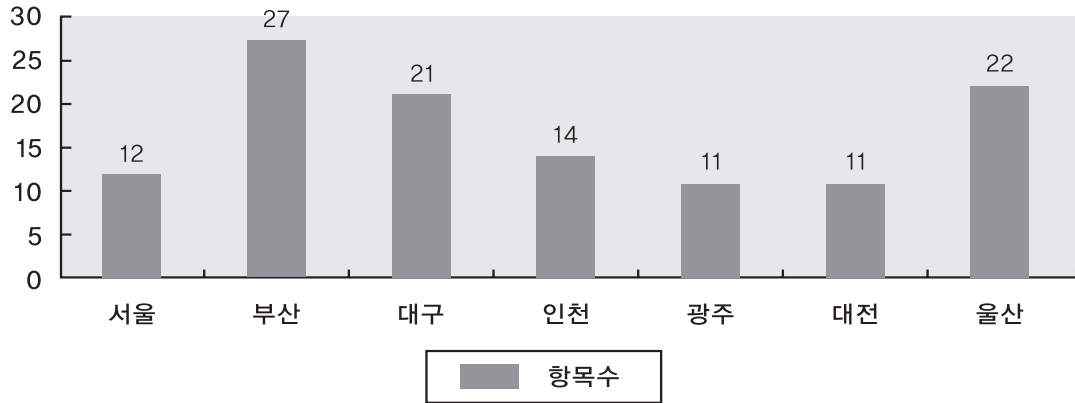
더욱이 조정율이 100%를 넘는 서울특별시도 세출예산대비 기준재정수요액이 59.3% 수준에 머물

고 재원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보면 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10>참조).

<표8>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

구분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서울	(측정단위× 단위비용)의 합 + 고정비용 ⁵⁾	다음연도 자치구 지방세 수입 추계액의 95/100
부산	(측정단위× 단위비용)의 합 ⁶⁾	기준세율 ⁷⁾ 로 산정한 자치구의 수입액 ⁸⁾
대구	(측정단위× 단위비용)의 합 ⁹⁾	기준세율로 산정한 자치구의 수입액
인천	(측정단위× 단위비용)의 합 + 고정비용 ¹⁰⁾	전전년도와 직전년도 2년도의 지방세 및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의 80%
광주	(측정단위× 단위비용)의 합 ¹¹⁾	기준세율로 산정한 자치구의 수입액
대전	상동	상동(단, 자치구수입액은 4년간 평균수입액)
울산	상동	기준세율로 산정한 자치구의 수입액

<표9>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현황



5) 단위·고정비용은 조례에 금액 명시

6) 단위비용은 전년도 행정부 보통교부세 산정비용으로 활용, 없는 것은 전년도 자치구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

7) 지방세법 표준세율의 80/100

8) 해당년도 자치구의 예산기준

9) 단위비용은 전년도 자치구예산액을 기준으로 자치구 측정항목별 예산총액을 자치구의 측정단위의 총 개수로 나누는 방식

10) 단위·고정비용은 자치구의 전년도와 전년도 직전2년도 세출예산(국,시비제외)을 분석하여 회귀방정식으로 산출

11) 단위비용은 전년도 자치구예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

〈표10〉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세출예산 대비 기준재정수요액(2007)

(단위:억원)

구 분	세출예산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요액 /세출예산
		합계	기초수요	보정수요	
계	53,421	31,664	30,773	891	59.3%

※ 출처 :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p25('07년, 서울시의회)

4.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안정적 재원확보 곤란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부분 부동산의 이전 및 등록에 따른 것으로 재산과세 측면이 강하고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04년 12.9% 증, '05년 1.1% 감)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표11〉참조).

최근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라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를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취·등록세 세수가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정책방향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변동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11〉 연도별 취·등록세 예산현황

(단위: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규 모	53,352	60,267	59,573	61,321	62,417
증감액	-	6,915	-694	1,748	1,096
증감율	-	12.9%	-1.1%	2.9%	1.7%
구평균 증감액	-	100	-10	25	16

주 : 당초예산기준

IV. 자원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1. 자원조정교부금 재원을 상향조정

사회적·경제적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들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수요 투자가 확대되어 자치구의 재정난¹²⁾이 가중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부족액에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 조례를 개정토록 명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시·도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 거래세 감소분 중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적정 수준의 재원율은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안)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평균 재원율인 57% 규모로 상향

현행 자치단체별 평균 재원율을 감안하여 평균재원율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의 재원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으로서 최대 7%에서 최소 5%인상으로 3,555억원의 재원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12〉 평균재원율인 57% 규모로 상향시 증가규모 현황

(단위:억원)

구 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비고
현행	57%	50%	51%	52%	50%	70%	68%	58%	
변경	60%	57%	57%	57%	57%	70%	68%	58%	
증감	3%	7%	6%	5%	7%	-	-	-	
증감액	3,555	2,279	436	291	549	-	-	-	
평균 증감액	65 (55개)	91 (25개)	29 (15개)	42 (7개)	69 (8개)	-	-	-	자치구수

주 1. '07년 당초예산기준

2. 평균재원율 57%에 모자라는 4개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대하여 평균규모로 인상

12)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5억이상 사업 없음('07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비율 51.6%)

2안)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평균 재원율을 62% 수준으로 상향

이 방안은 평균 재원율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는 57% 수준으로 재원율을 상향시키고 평균 재원율을 상회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 1,474억원(〈표〉14참조)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방안으로서 3,885억원의 재원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13〉 평균재원율을 62% 규모로 상향시 증가규모 현황

(단위:억원)

구 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비고
현행	57%	50%	51%	52%	50%	70%	68%	58%	
변경	62%	57%	57%	57%	57%	75%	72%	60%	
증감	5%	7%	6%	5%	7%	5%	4%	2%	
증감액	3,885	2,279	436	291	549	125	153	52	
평균 증감액	56 (69개)	91 (25개)	29 (15개)	42 (7개)	69 (8개)	25 (5개)	31 (5개)	13 (4개)	자치구수

- 주 1. '07년 당초예산기준
- 2. 평균 57%에 못 미치는 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3. 평균 57%를 상회하는 단체 : 광주, 대전, 울산

〈표14〉 '06년도 거래세 감소보전분 배분시 재정조정교부금 재원율 인상규모

(단위:억원)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비고
교부액	2,766	1,218	364	385	331	181	194	93	
재원율	57%	50%	51%	52%	50%	70%	68%	58%	
평균 증감액	1,474	609	186	200	166	127	132	54	조례비율
취등록세 환산율	2.3%	1.8%	2.5%	3.4%	2.1%	5.1%	3.4%	2.0%	'07년분

주 : '06년 추계기준

2. 재정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선

각 자치단체의 현실적인 기본행정수요 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다.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이 대부분 과거 개정된 조례를 기준¹³⁾으로 운영중으로 현재 자치구의

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요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별 변경 가능항목은 다르겠지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최근 몇 년간 공통적으로 확대되어 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수요의 확대반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 반영률을 높이는 것으로서 기준반영률은 전국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통교부세의 36% 수준의 반영방안과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회보장비 예산비율('07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인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분야 수요가 많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울산광역시 경우를 가정해 보면 중구는 15억원 증가하고 북구는 3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표15>참조).

<표15> 사회복지분야 강화시 배분액 비교예시(울산)

(단위:억원)

구 분	보통교부금			증감액		증감율	
	현행	변경		36% (D=B-A)	40% (E=C-A)	36% (D/A)	40% (E/A)
	32.3%(A)	36%(B)	40%(C)				
계	1,107	1,107	1,107	0	0	0.0%	0.0%
중구	358	365	373	7	15	1.9%	4.1%
남구	332	337	344	5	12	1.5%	3.6%
동구	231	233	237	2	6	0.8%	2.5%
북구	186	172	153	-14	-33	-7.5%	-17.7%

주: '07년 당초예산 기준

다음은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 사회분야 측정단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기준재정수요 측정단위 중 사회분야 측정단위 수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자치단체(예:부산 6개, 20.7%수준)의 측정단위수를 늘리는 방법이다.<표16>참조

사회복지분야 측정단위로는 노인(65세이상), 장애인, 아동인구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보건·문화 등 사회분야 측정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13)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5년 조례 개정후 별도 개정 없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운영중임

〈표16〉 자치단체별 사회분야 측정단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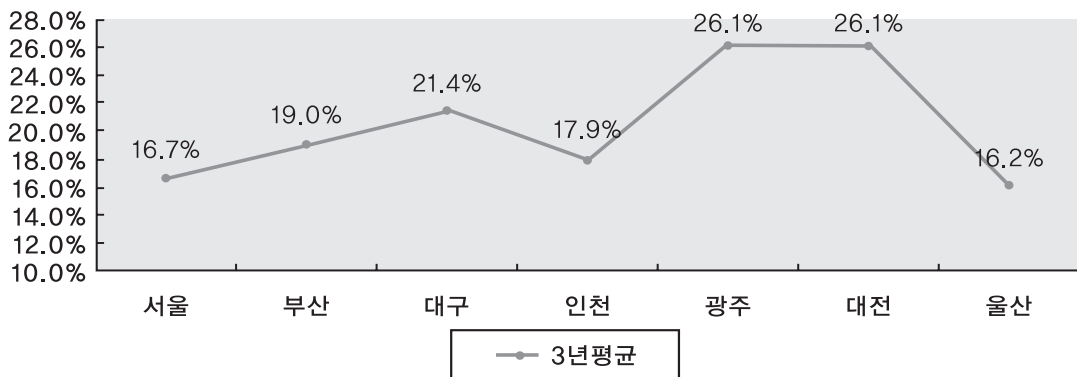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측정단위수(A)	사회분야 측정단위수(B)	비율(B/A)
계	132	39	29.5%
서울	24	8	33.3%
부산	29	6	20.7%
대구	21	7	33.3%
인천	14	5	35.7%
광주	11	3	27.3%
대전	11	3	27.3%
울산	22	7	31.8%

3. 재정조정교부금 대상재원 변경

현 대상재원인 취·등록세는 경기에 따라 세수가 증감되는 거래세로 불안정함('04년 12.9%증, '05년 1.1%감)으로 시세 총액의 일정률¹⁴⁾로 재정조정 교부금 대상재원을 변경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운용을 도모하는 방법이다(〈표18〉참조).

동급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재정보전금의 경우도 도세의 일정액¹⁵⁾을 재원으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시세의 일정률로 재원을 변경할 경우 한 층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7〉 시세총액중 재정조정교부금 비율('05 ~ '07)



14) 구체적인 재원율은 별도 검토 필요함으로 금회는 논외로 함

15) 도세 징수액의 재정보전금 재원 사용비율 : 시군 27%, 인구 50만 이상의 시 47%

〈표18〉 시세총액과 취·등록세의 연도별 증감율 비교

(단위:억원)

구 분		계(평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시세 총액	계	879,298	117,299	131,483	147,959	155,645	161,096	165,816
	증감율	7.2%		12.1%	12.5%	5.1%	3.5%	2.9%
취· 등록세	계	340,149	43,220	53,351	60,267	59,573	61,321	62,417
	증감율	8.0%		23.4%	12.9%	-1.1%	2.9%	1.7%

주 : 당초예산기준

V. 맺음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가 도입 된지도 20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자치구 재정 형평화와 재정지원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그간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제기되는 산정방식의 현실성 제고, 적정수준의 재원을 확보 등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재원조정교부금의 도입 취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광역시와 자치구의 재정수요와 재정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알맞게 재원률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아울러 자치구에서도 의존적인 재원에 힘쓰기보다 지방세수 확대 및 세외수입 발굴, 자체경비 절감 등 자체적인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력이 계속될 때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운영되고 주민들의 복리향상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